

아리야리! 정선
the mecca of arirang, jeongseon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http://www.jeongseon.go.kr/>

제488호 2019. 7. 24. (수)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19-790호 정선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 정선군 공고 제2019-794호 정선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 정선군 공고 제2019-796호 정선군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운영규칙 폐지안 11

□ 발행 : 정선군청 기획실 (전화:560-2224, FAX:560-2592)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19-790호

정선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하는 지역공동체 형성으로 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영역을 말한다.
2.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5가구 이상 마을단위 주민의 공동체를 말한다.
3.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마을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발전시키고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4. “사업주체”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공동체사업”이라 한다)을 주도하고 추진하는 마을주민·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기본이념)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해당 주민이 주도한다.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과 군이 상호 신뢰하고 협력한다.

제5조(책무 등)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체사업의 지속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동체사업에 참여하고 추진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

③ 주민은 스스로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해당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군수는 공동체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정선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공동체사업의 효율적 지원방안 및 체계
3.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해마다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에는 군의 주요정책과 다른 계획에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⑤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주민, 사업주체, 군 소재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제7조(사업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체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3. 주민의 복지증진
4.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공동적 공동협력 활동
5.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 보전
6. 교육·컨설팅 등 주민역량 강화
7. 마을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홍보 및 연구·조사
8. 관련 미디어이용 활성화
9.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공동체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비를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원신청 및 선정) ① 공동체사업의 지원 대상마을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주체는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필요하면 공개모집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동체사업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와 함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마을을 선정한다.

제9조(보고 및 사용승인 등) ① 사업주체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체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 평가내용 및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매·양도·교환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및 환수)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급한 공동체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본래의 사업목적에 부합여부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목적 외에 사용했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때
4.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때
5. 거짓보고를 한 때

제11조(평가 및 표창) ① 군수는 해마다 공동체사업에 대한 분석·평가를 해야 하며, 그 분석·평가의 전문성과 앞으로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평가결과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 및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사업주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센터설치·운영) ① 군수는 공동체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정선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이 조례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방법,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한다.

제13조(위원회) ① 군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정선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 조례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2. 공동체사업의 지원범위 및 규모
 3.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사업의 선정
 4. 모범사례 발굴 및 보급
 - 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 ④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과장, 경제과장, 농업축산과장,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1. 일정지역에서 주민 대표로 지명 또는 선출된 사람
 2. 마을공동체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공동체사업 관련 분야 전문가
 4. 정선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원의 임기·위촉해제·수당지급, 간사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공고 제2019-794호

「정선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9년 7월 23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정선군과 출향인 간의 교류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역량 결집을 도모

나. 군과 출향인 간의 적극적인 교류·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발전 및 출향단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안 제2조)

다. 출향군민의 권리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마. 출향군민회에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바. 출향군민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1) 향토지 보급 등 군정시책의 홍보

2) 전통시장, 축제활성화 등 고향발전을 위한 방문사업

3) 정선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판매 및 홍보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사.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고향발전에 기여한 출향군민 및 출향단체에 포상 수여

아.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 : 2019. 7. 23 ~ 2019. 8. 12.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2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행정과

- 연락처 : 전화(033-560-2156), 팩스(033-560-2590)
- 주 소 : (2316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행정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향군민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권익신장 및 역량결집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출향군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정선군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군민”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정선군에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정선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 한다)을 말한다.
2. “출향군민회”란 출향군민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출향군민의 권리) 출향군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을 두지 않는 한 정선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출향군민 및 출향단체의 활성화와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출향군민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출향군민회의 책무) 출향군민회는 정선군 발전을 위하여 군정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4조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원칙적으로 출향군민회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향토지 보급 등 군정시책의 홍보
2. 전통시장, 축제 활성화 등 고향발전을 위한 방문 사업
3. 정선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판매 및 홍보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포상) 군수는 군정발전에 기여한 출향군민 및 출향단체에 대하여 「정선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록기준지의 결정) ①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준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주민등록법

제6조 (대상자)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2. 거주불명자: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3.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 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 나.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 정선군 포상 조례

제2조(포상대상)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포상은 군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군민(군의 주민을 말하며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기관 또는 단체
3. 공무원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군 외의 거주자 또는 기관·단체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9조(포상절차) ① 군의 실·과장 또는 산하기관장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포상은 정선군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우등상, 경연입상 등 특별한 경우에는 그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정선군 공고 제2019-796호

정선군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운영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정선군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운영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7월 일
정 선 군 수

1. 규칙명 : 정선군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운영규칙

2. 폐지이유

종전 법률에 따라 설치된 정선군민원재심의위원회는 개정 시행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민원업무 추진을 위하여 본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정선군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운영규칙」을 폐지함.

4. 입법예고기간 : 2019. 7. 23. ~ 8. 12.(21일간)

5. 의견 제출

이 폐지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FAX 560-2407)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민원과(전화: 560-22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붙임 1. 정선군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운영규칙 폐지규칙안 1부.
2. 관계법령 1부.

정선군 규칙 제 호

정선군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운영규칙폐지규칙안

정선군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운영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법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2.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3.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
4.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그 기관의 장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이하 "민원조정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③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그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국장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원 중에서 지명하고, 위원은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거부하는 것으로 결정된 복합민원을 심의·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 기관의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